

#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년)여부 공시 대상]

해당사항 없음

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 대상]

협회표준코드	펀드명	발생일자	발생일 설정잔액	발생일 순자산총액	기준가격	비고
KR5219786732	신한 BNPP 더드림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[주식](종류 A)	20120429	11,541,873,822	9,659,267,924	836.89	주 1)
KR5219786740	신한 BNPP 더드림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[주식](종류 C-e)	20120429	451,321,257	369,340,129	818.35	
KR5219826835	신한 BNPP 엄마사랑어린이머정스타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[주식](종류 A)	20120429	2,414,582,382	1,745,319,446	722.82	
KR5219826843	신한 BNPP 엄마사랑어린이머정스타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[주식](종류 C)	20120429	659,760,727	459,367,550	696.26	
KR5219826850	신한 BNPP 엄마사랑어린이머정스타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[주식](종류 C-e)	20120429	462,440,437	329,613,442	712.77	
KR5219842030	신한 BNPP 해피라이프연금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[주식]	20120429	4,757,844,857	3,525,161,383	740.92	

주1) 해당 자펀드(종류형 포함)는 소규모펀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소규모 모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자펀드에 해당되므로 모펀드가 언제든지 임의해지 될 수 있으므로 공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.

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[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공시대상]

해당사항 없음

\*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(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공시 제외)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